

일반적인 수험서 내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은 출제이면서 변별력을 아주 잘 갖춘 문제입니다. 7급 준비생들은 반드시 풀어봐야 합니다. 지방자치론을 5문제 출제하면서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경찰국 설치 반대가 이슈가 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022.10.27.부터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감 이하에서 전체 경찰공무원으로 가입범위가 확대되며 전국적 연합협의회 설립도 가능해짐)

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은 넓은 의미로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이다.
- ② 공·사행정 이원론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함께 효율적 관리를 강조한다.
- ③ 윌슨(Wilson)은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서 정치와 행정의 통합을 주장한다.
- ④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해설

① (○) • 행정의 의미

광의	Administration. 행정은 합리성을 띠는 협동적 집단행위 • 조직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리기술이나 인간의 집단적 협동의 측면에 초점. • 공(公)·사(私)를 구분하지 않고 정부조직·기업·비영리민간단체 등 모든 조직의 보편적·공통적 현상.
협의	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 공적 목적(공익)의 달성을 위한 정부나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 • 목적과 주체 면에서 사행정(私行政 private administration)과 구별됨. • 행정은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 ⇨ 행정은 권력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속성과 관리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의 속성을 동시에 지님.

- ② (×) 공·사행정 1원론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효율적 관리를 강조
- ③ (×) 윌슨(Wilson)은 「행정연구(1887)」에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
- ④ (×) 정치·행정 1원론은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

답 ①

2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익에 대해 과정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하며,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다고 인식한다.
- ② 롤스(Rawls)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극소화(minimax)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 ③ 사회적 능률성(social efficiency)은 디목(Dimock)이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다.
- ④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적 관계가 강조된다.

해설

- ① (×) 공익에 대해 실체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공익의 선형성)한다고 보며, 과정설에서는 사익과 무관한 공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익은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공익의 경험성)된다고 인식한다.
- ② (×) 최대극소화(minimax) 원리 ⇨ 최소극대화(Maximin)원리.
최소극대화 원리는 가장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극빈층)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 ③ (○)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성(mechanical efficiency)을 강조했으나 사회적 능률성(social efficiency)은 인간관계론이나 통치기능설에서 강조하였다. 기계적 능률성은 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금전적인 수치로 파악하려는 산술적·타산적·양적 능률 개념이며, 사회적 능률성은 인간의 존엄, 사회문제해결, 다양한 가치의 조화 등 사회 전반적 관점을 반영한 능률 개념이다. 통치기능설의 학자인 디목(M. Dimock)은 종래의 기계적 능률성은 '누구를 위한 능률인가?'의 목적의식과 방향 감각이 결여되어 기계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능률의 상대화·사회화·인간화를 주장하며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 ④ (×) 효과성(effectiveness)이 아니라 능률성(eficiency)에 대한 설명임.

답 ③

3 행정학 관련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굿노(Goodnow)는 정치는 국가의지의 표현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했다.
- ② 테일러(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POSDCoRB를 제시했다.
- ③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순환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④ 메이요(Mayo)는 호손실험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설

- ① (○) 굿노(F. Goodnow)는 「정치와 행정 (Politics and Administration ; 1900)」에서 정치는 국가의사의 결정작용(국가의지의 표명과 정책 구현)이고, 행정은 국가의사의 집행(실행·실천)작용이라고 봄(정치·행정2원론)

- ② (×) 테일러(F. 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했음. 굴릭(L. Gulick)은 '행정과학논총(1937)'에서 최고관리층의 7대 기능으로 POSDCoRB를 주장.
- ③ (○) 애플비(P. Appleby)는 「정책과 행정(Policy and Administration)」에서 정치와 행정의 과정은 연속적·순환적이므로 결합관계를 형성하며 행정은 곧 정책형성과정이라고 봄.
- ④ (○) 메이요(E. Mayo)는 호손(Hawthorne) 실험을 통해 생산량은 일방적인 지시나 종업원의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 사회적 상황(직장에서의 감정, 희망, 가치관, 불안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 실제 작업 조건과 작업 효율성과 사이에 직원들의 감정과 의욕 등 주관적 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태도는 자연발생적인 비공식적 인간관계, 비공식 집단의 집단규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봄. 집단규범이 기업의 조직 목표를 지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봄.

답 ②

4 시장실패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 필요하다.
- ② 외부불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과소공급되므로 정부는 보조금을 비롯한 공적 유도가 필요하다.
- ③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유도나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 ④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때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나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해설

- ② (×) 외부경제의 경우 ⇨ 시장에서 과소공급·소비 ⇨ 공적 유도(예 보조금)
외부불경제의 경우 ⇨ 시장에서 과다공급·소비 ⇨ 정부의 규제(예 벌금, 과세)

시장실패 원인별 대응방식

구 분	공적 공급(조직)	공적 유도(유인, 보조금)	정부규제(권위)
불완전경쟁(독과점)			○(독과점규제, 경쟁 촉진)
자연독점(요금제)	○(공기업 설립을 통한 공급)		○(공기업에 대한 가격통제)
정보의 비대칭성		○(제품정보 제공시 유인 제공)	○(제품정보 공개 의무화)
외부효과의 발생		○(외부경제의 경우)	○(외부비경제의 경우)
공공재의 존재	○(공급비용은 조세수입으로 충당)		

답 ②

5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만 모두 나열한 것은?

- ① 정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집단
- ② 국회, 정당, 전문가집단, 지방정부
- ③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사법부
- ④ 대통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집단

해설

정책과정의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자
① 입법부(의회,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정부조직 밖에서 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② 행정부(행정수반 - 대통령·수상, 행정기관, 행정관료)	① 정당(여당·야당)
③ 사법부(법원, 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② 이익집단·압력단체
④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지방행정기관)	③ 일반국민, 여론
	④ NGO(시민단체)
	⑤ 전문가·학자, 정책공동체
	⑥ 언론·매스컴

답 ①

6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윌슨(Wilson)은 규제에 의한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는 상황을 이익집단정치로 분류하고, 여기에서 포획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 ㉢ 관리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수단과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제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해설

- ㉠ (×) 이익집단정치 ⇨ 고객의 정치
이익집단정치는 편익과 비용이 각각 낮은 수준으로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임.

㉡ (○) **규제의 개입 범위 :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구분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특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전규제 예 주로 허가제·인가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사후규제 예 주로 신고제·등록제
법 규정 형식	~할 수 있다. ~이다. -허용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허용, 나머지는 금지)	~할 수 없다. ~가 아니다. -금지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금지, 나머지는 허용)
입증책임	피규제자가 규제법규 준수를 입증	규제기관이 규제법규 위반을 입증
효과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제약됨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됨

- ㉢ (×) 관리규제 ⇨ 성과규제

규제의 대상에 의한 분류 : 수단규제, 성과규제, 관리규제

구분	수단규제 - 투입규제	성과규제 - 산출규제	관리규제(regulatory management) - 과정규제
의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	수단·성과가 아닌 과정을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는 피규제자가 만든 규제목표 달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요구
사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특정 유형의 환경통제기술 사용을 요구, 작업장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착용의 의무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제, 인체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에 허용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것. 오염물질 배출량 통제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 기초하여 피규제자가 체계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 정책목표와 무관한 수단규제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규제준수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정책목표 달성 가능.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며, 피규제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할 수 있음. 성과 측정이 아니라 피규제자가 설계한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음.

- ㉣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 ㉤ (×) 3년 ⇨ 5년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 중양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답 ②

7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뷰캐넌과 툴록(Buchanan & Tullock)은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외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도 증가하므로 적정 참여자 수를 강조한다.
- 티부(Tiebout)는 '발에 의한 투표'가 공공재 공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 니스카넨(Niskanen)은 관료가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주장한다.
- 던리비(Dunleavy)는 예산의 성격과 기관유형 등에 따라 고위관료들이 예산극대화 행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 ① (×) 참여자 수가 증가할수록 외부비용은 감소하나 내부적 의사결정비용은 증가하므로 전체적인 정치적 결정비용은 감소하다 증가함. 정치적 결정비용을 극소화하는 최적다수결 수준은 내부적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으로 봄.

· 최적다수결 : 정치적 비용의 극소화(J. Buchanan & G. Tullock)

- 의의 : 정치인은 공익보다 사익(권력장악·확대)의 증대를 목표로 하므로, 바람직한 집단적 의사결정은 정보제공·설득·합의·정치적 타협을 위한 정치적 비용을 극소화하는 것.
 - 정치적 결정비용(표결에서 발생하는 비용) : 어떤 표결방식이든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을 수반함.
 - 내부적 의사결정비용 : 의사결정과정에 소요되는 자원·시간·노력과 기회의 소모비용. 어떤 대안의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 비율이 높을수록 커짐. 만장일치(전원합의)를 요할 경우 극대화되며, 독재일 경우 극소화됨.
 - 외부적 비용 : 자신의 선호와 다른 대안이 선택될 경우의 비용. 어떤 대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용. 대안 통과에 요구되는 찬성표의 비율이 낮을수록 더 커짐. 전원합의의 경우 0이 되며, 독재일 경우 극대화.
 - 최적다수결 : 어떤 표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최저 수준인 찬성비율 즉, **최적다수결은 내부적 비용과 외부적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 ② (×) 자원배분기능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왜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논의 중 하나가 티부가설이다. 즉, 주민들은

기존 지역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느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를 하므로 공공재에 대한 주민 선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조세 간의 묶음을 주민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로 진입·퇴장을 보장하면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이다(지방분권 옹호). 공공재는 분권적인 배분체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며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새뮤얼슨(P. Samuelson)의 공공재 공급 이론을 반박한 것이다.

③ (×) 관료가 순편익이 0이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주장.

• 니스칸넨(W. Niskanen)의 관료이익(예산)극대화 가설(budget maximization)

행위자	이기적·합리적 형태	공공재 생산규모의 최적수준 판단
정치인 (공공재의 구매자)	득표의 극대화(재선을 목표) → 국민 입장 반영한 공공재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적 최적수준(political optimum) - 사회후생극대화 지점(최적 수준)에서 구매하려 함 - 순편익(=총편익 - 총비용) 극대화 수준 → 한계편익=한계비용
관료 (공공재의 생산·공급자)	관료 자신의 효용 극대화. 관료가 획득하는 예산 수입은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자기부처 예산의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료적 최적수준(bureaucratic optimum) -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생산 - 순편익=0(총편익=총비용) → 한계편익 < 한계비용

관료가 산출하는 업무량이 많을수록 의회로부터 많은 예산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공재 산출량을 생산가능한 최대수준까지 생산하여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한 공공재를 산출하는 낭비적 결과가 발생.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노력이 불필요한 조직·정책의 유지·확대를 가져오므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고, 정부실패 발생. 의회의 통제가 약한 행정부 우위의 불균형적인 쌍방독점적 예산과정에서는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어 후생 측면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통제하려면 입법부에 의한 통제 강화가 필요.

④ (○) P.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에서는 관료들이 공적 결정시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수용하나, 관료가 자기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 모든 기관, 모든 관료가 모든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종류(핵심예산, 관청예산 등), 관료 위치(고위직, 하위직)에 따라 다양한 이기적 행태가 나타난다고 주장.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이 예산극대화 추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 이유로 ㉠ 관료제 내에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가 존재하며, ㉡ 예산증가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정도가 예산의 구성과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도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는 점을 제시.

답 ④

8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는 정부를 노젓기의 중심에 놓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관계를 강조한다.
- ② 신공공관리는 경쟁과 선택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협력을 강조한다.
- ③ 신공공관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결과에 초점을 둔다.
- ④ 신공공관리는 관료를 조정자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본다.

해설

- ① (×) 양 이론 모두 정부역할 축소 - 직접적인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steering) (전략적 목표설정)를 강조한다. 단, 신공공관리론은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부에 놓지만, 신국정관리는 권위·집권·주도와 같은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 하기를 추구한다.
- ③ (×) 신공공관리는 결과(효율성·생산성)에 초점, 뉴거버넌스는 과정·절차(민주성·정치성)에 초점
- ④ (×) 신공공관리는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보며, 뉴거버넌스는 관료를 조정자로 봄.

■ 관료제 패러다임,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뉴거버넌스) 비교

구 분	관료제 패러다임	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
인식론적 기초	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기구	계층제	시장	서비스 연계망(공동체)
관리가치	능률성	결과(효율성·생산성)	신뢰 / 과정(민주성·정치성)
정부역할	방향키, 노젓기	방향키(steering)	
관료역할	행정가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	(네트워크) 조정자(coordinator)
작동원리	내부규제	경쟁체제(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파트너십)
서비스	독점공급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공급(시민, 기업 등 참여)
관리방식	규칙위주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 내 관계		조직 간 상호작용

답 ②

9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로위(Lowi)의 분배정책에서는 포크배럴(pork-barrel)이나 로그롤링(log-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 ㉡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진입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 ㉢ 알몬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상징정책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위한 정책으로 조세, 징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재분배정책은 정책집행을 위한 안정적 절차화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 강도는 높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 (○) 분배정책에서는 수혜자집단들이 서비스와 편익을 더 많이 배분 받으려는 나눠먹기식정치·돼지구유통정치(pork barrel politics)가 나타나거나, 승자와 패자간 정면대결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서로 로그롤링(log-rolling; 담합), 투표의 거래(vote trading)가 이루어진다고 봄.
- ㉡ (×) 보호적 규제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여 일반대중을 보호하려는 정책(예 식품·의약품 사전허가제, 근로기준설정, 최저임금제, 독과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공중에게 해로운 활동 및 조건은 금지되고 이로운 활동은 요구됨. 규제정책 중 대부분을 차지.
경쟁적 규제정책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 권리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일정한 측면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진입규제가 해당되며, 지대추구(rent seeking)의 가능성이 큼. 예 각종 인허가, 면허제도(고속버스노선허가, 방송국 설립인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의사면허). 보호적 규제정책과 배분정책이 혼합된 혼합정책(Hybrid Policy)의 성격.

- ㉢ (×) 조세, 징병은 추출정책의 사례
- ㉣ (○) **정책유형에 따른 집행과정의 차이 - 리플리(R. Ripley)와 프랭클린(G. Franklin)**

구분	배분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집행에 대한 논쟁과 갈등의 정도	낮음	보통	높음	높음
관료의 집행결정에 대한 반발의 정도	낮음	보통	높음	높음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의 정도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정부활동의 감축을 원하는 압력의 정도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높음
성공적인 집행의 상대적 어려움	낮음	보통	보통	높음
안정적 루틴을 통한 원만한 집행의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낮음
집행기관의 관여도, 주요 관련자들 간 동일성과 관계의 안정성*주1)	매우 높음	낮음	낮음	높음

*주1)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 : 상호작용 패턴의 지속성

답 ③

10 미래예측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 ㉠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분석기법
- ㉡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 의견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집단토의기법
-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익명성이 보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의견조정과 합의를 유도하는 기법

	㉠	㉡	㉢
①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교차영향분석
②	교차영향분석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③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교차영향분석
④	교차영향분석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해설

교차영향분석 (cross-impact analysis)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미래의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에 대해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주관적 예측방법. 사건 간 상호관련성 식별에 도움을 주며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의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분석. 조건확률이론(한 사건의 발생확률이 다른 사건에 종속적)에 기초, 교차영향행렬 사용(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사건을 규명하여 관련사건 간 상호작용이 미치는 잠재적 효과를 행렬로써 분석). 델파이기법은 개별 사건의 발생가능성에만 관심을 두지만, 교차영향분석은 관련사건 간 잠재적 의존관계를 고려.
Brainstorming	아무런 제약 없이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대면접촉을 유지하며 토의를 통해 창의적 의견이나 기발한 idea를 창안하는 주관적·질적 분석기법. 다수 구성원이 하나의 주제(여러 주제)를 두고 idea를 무작위로 개진해 그 중 가장 좋은 해결책 모색

Delphi기법	전문가 1인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문제의 예측·진단·결정시 토론 없이 의견일치를 볼 때까지 익명성을 보장한 채 설문조사의 반복과 환류를 통해 전문가집단(일반인 x)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도출해 분석·종합(전문가들의 합의를 유도)
----------	---------------------------------------------------------------------------------------------------------------------------------

답 ②

11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만족모형에서 정책담당자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 ㉡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두 요소를 절충한 것으로 근본적 정책결정은 점증모형을, 부분적 정책결정은 합리모형을 따른다.
- ㉢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의 정책결정을 설명하며 정책결정 요소들이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 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고, 앨리슨의 세 가지 모형은 실제 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 모두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 정책딜레마모형은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약하고 집단 간 권력이 불균형적일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고 본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만 옳음

㉢ (x) 혼합주사모형은 Etzioni가 정책결정의 규범적·이상적 접근방법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실증적 접근방법인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개발한 모형이다.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나누고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 부분에서는 대안의 고려나 결과 평가를 대상으로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을 따르고 세부적 결정은 근본적 결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증모형의 방법으로 개선된 대안을 마련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혼합주사모형의 근본적 결정은 나무보다는 숲(전체 대안)을 개괄적으로 파악(중요한 결과만 파악)하는 유형의 결정을 의미하고, 세부적 결정은 숲보다는 나무(한정된 대안)를 세밀하게 파악(모든 결과를 파악)하려는 유형의 결정을 의미한다.

■ 혼합주사모형의 기본적(근본적) 결정과 세부적(부분적) 결정의 지속적 교호작용

구 분	기본적·근본적 결정(Fundamental Decision)	세부적·부분적 결정(Bit Decision)
	세부결정을 위한 테두리나 맥락을 결정하는 행위. 환경의 급변, 전체적 문제상황의 변화시 행함.	기본적 결정의 구체화·집행. 안정된 상황에서 단기적 변화에 대처.
대안탐색 (고려할 대안의 수)	중요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모두 고려 (포괄적 합리모형)	기본적 결정의 범위 내에서 소수의 대안만 고려 (점증주의)
대안분석 (각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들의 중요한 결과만을 개괄적으로 예측 (합리모형의 엄밀성을 극복)	대안의 결과는 세밀하게 분석 (포괄적 합리모형)

구 분	합리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기본적 결정)	혼합모형(세부적 결정)
고려할 대안의 수(대안탐색)	포괄적	한정적	포괄적(전체)	한정적(부분)
각 대안의 결과예측(대안분석)	포괄적	한정적	한정적(개괄적 예측)	포괄적(세밀한 예측)

㉣ (x)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상위 계층에 적용가능성이 높고, 앨리슨의 세 가지 모형은 실제 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 모두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앨리슨(G. Allison) 모형의 비교

구 분	Model I. 합리적 행위자 모형	Model II. 조직과정모형	Model III. 관료정치모형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잘 정비된 명령·복종 체계)	느슨하게 연결된 半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상호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정치적 참여자)들의 집합체
응집성	응집성이 강함	응집성이 약함	응집성이 매우 약함
행위자의 목표와 갈등	조직전체의 목표	조직전체 목표 + 하위조직의 목표	조직전체목표 + 하위조직의 목표 + 행위자 개인의 목표
목표의 공유도	매우 강함	약함	매우 약함
정책결정의 일관성	매우 강함(항상 일관성 유지)	약함(자주 바뀜)	매우 약함(거의 불일치)
권력의 소재	최고지도자가 권력 보유(집권) 공식적 권위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된 전문적(기능적) 권위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정책결정 양태	최고지도자의 명령과 지시(동시적·분석적 해결)	준해결, SOP에 의한 관습적 결정(순차적 해결)	정치적 결정(정치적 게임규칙에 의한 타협·협상·연합·흥정)
조직 내 적용 계층	조직의 전계층	조직의 하위계층	조직의 상위계층
합리성	완전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㉔ (×) 정책딜레마모형은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강하고 갈등집단 간 권력균형 상태일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고 본다.

■ 정책딜레마의 증폭요인(발생조건)

선택요구의 압력	정책대안들 가운데서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함.
정책대안의 특성	상호 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만 ① 대안들이 상충적·단절적이어서 상호 절충이 불가능하고, ② 갈등적 대안들을 함께 선택할 수 없으며, ③ 대안들의 가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각각의 결과치나 기회손실(opportunity loss)이 비슷하고, ④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을 찾을 수 없다.
행태적·상황적 조건	① 대립당사자들의 정부 불신 ② 갈등집단 간 권력균형 ③ 갈등집단들의 강한 내부응집력 ④ 대안선택에 걸린 이해관계가 큼 ⑤ 갈등집단 간 자율조정기능 취약 ⑥ 정책문제에 대한 정부조직의 관할 중첩 ⑦ 특정대안의 선택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명확히 구분됨 ⑧ 갈등당사자들이 정책대안의 이익이나 손실을 과장하는 등 계략적 행동을 하는 경우 ⑨ 갈등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

답 ②

1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 유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전문성과 기술 등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정책결정자의 권력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 ②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결정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한다.
- ③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책임 하에 정책을 집행한다.
- ④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와 대체적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목표의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해설

① 관료적 기업가형, ② 협상가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지시적 위임가형

☒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론

고전적 기술 관료형 (classical technocr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구분, 결정자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들은 이 목표를 지니. • 결정자는 계층제적(위계적) 명령구조를 형성하고,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내용을 결정하며, 특정 집행자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만 위임. • 집행자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술적 문제 정도에서만 미약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집행자가 충실히 집행. 결정자가 정책집행자들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함. • 집행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지님.
지시적 위임자형 (instructed deleg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됨. • 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는 목표의 소망성에 동의함. •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목표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집행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정책집행자는 그러한 목표를 받아들이고, 다만 수단의 선택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지니게 됨. • 집행자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관리적]·협상적[교섭적] 능력을 소유.
협상자형 (bargai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 반드시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 공식적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제시하지만 집행자와 목표의 소망성에 대해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결정자와 집행자 간, 집행자 상호 간 목표와 수단에 관해 협상하며, 힘과 협상력이 우월한 집단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됨. 집행자들이 결정자들의 권위에 쉽게 압도당하지 않을 때 나타남.
재량적 실험가형 (discretionary experimen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자가 정책수립 능력이 없고, 집행자에게 광범한 재량을 위임하려는 유형. • 정책결정자는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정보·기술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수준에 그침(결정자는 추상적인 일반 목표는 지지하지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능력이 없음). • 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를 구체화하고, 집행수단을 개발하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집행자들은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 • 집행자는 과업의 수행의사와 수행능력이 있음.
관료적 기업가형 (bureaucratic entreprene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권한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을 완전히 통제 • 집행자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권력을 동원하여 결정자가 받아들일도록 설득이나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 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홍정하여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얻어낼 수 있음. • 집행자는 그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며 달성할 능력도 보유.

답 ③

13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성타당성은 실험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을 말하며 성숙효과가 있을 때 저해된다.
- ② 외적타당성은 실험결과의 일반화 수준으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을 때 저해된다.
- ③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모방효과는 실험 직전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사람이 실험 진행과정에서 원래 성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 ④ 신뢰성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 사용할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으로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해설

- ① (×)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임
- ② (×) 외적타당성은 실험결과의 일반화 수준으로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때 저해된다.
- ③ (×) 실험직전반응효과(통계회귀요인, 회귀인공요인)에 대한 설명임.
모방(imitation)효과는 통제집단 구성원이 실험집단의 구성원을 모방하게 되어 발생하는 효과
- ④ (○) 타당성(측정의 정확성)이 높아지려면 신뢰성(측정의 일관성)이 반드시 높아야 함(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임).
단, 신뢰성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님(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조건은 아님)

답 ④

14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소속조직 및 소속조직의 목표와 일치화되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태도의 수준을 말한다.
- ② 태도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동일화하여 내재화할 때 발생된다.
- ③ 행위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이유로 조직에 남는 행동을 의무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 ④ 타산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보상과 비용의 이해타산에 따라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태도이다.

해설

- ③ (×) 규범적 조직몰입에 대한 내용임
- ☑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 소속된 조직에 대해 조직구성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 태도로서 개인이 조직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조직에 헌신하려는 정도.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의 수용, 조직을 떠나지 않으려는 애착, 조직에 충성하고 공헌하려는 의지 등

라이처즈 (A. E. Reichers)	타산적(Calculative) 조직몰입	조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상과 비용의 이해타산에 따른 몰입
	행위적(Behavioral) 조직몰입	조직 구성원의 표시된 행위적 특성들의 선명성에 따라 발생하는 몰입. 개인이 분명한 행위나 의사를 표시할 때(explicitness), 그 행위나 의사표시가 번복불가능하다고 보일 때(irrevocability), 대체할만한 조직이 부족할 때(insubstitutability), 그 행위나 표시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가질 때(publicity) 행위적 몰입도가 높음.
	태도적(Attitudinal) 조직몰입	소속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동일화하여 내재화함에 따른 몰입
마이어나와 엘런 (J. Meyer & N. Allen)	정서적(affective) 몰입	조직에의 정서적 애착심 및 조직의 가치에 대한 신념
	지속적(continuance) 몰입	조직을 남는 것과 떠남 사이의 경제적 가치(이직 비용)에 대한 인식. 예 남을 경우 급여수준이 높는데 그만 둘 경우 경제적 타격
	규범적(normative) 몰입	도덕적·윤리적 이유로 조직구성원으로 남아있으려는 의무감 예 새로운 사업을 앞장서서 주장하던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떠나면 조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직을 못하는 경우

답 ③

15 조직진단을 위한 환경분석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왓(SWOT) 분석
- ② 페스트(PEST) 분석
- ③ 스테퍼(STEPPER) 분석
- ④ 비용편익(B/C) 분석

해설

- ④ (×) 비용편익(B/C) 분석은 정책결정시 대안간 비교·평가방법으로서 공공사업의 유·무형의 비용·편익을 화폐가치로 평가·분석해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사회전체에 가장 큰 혜택을 가져올 사업을 선정할 때 사용한다. 조직진단의 환경분석 기법은 아니다.

- 조직진단 : 조직의 현재상태를 분석하여 조직이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활동으로서,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과정
- 조직진단의 내용으로서 환경분석 : 조직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조직이 향후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
 - ㉠ SWOT모형 : 외부환경의 변화로부터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요인을 도출하고 조직 내부분석으로부터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을 도출하여 이들을 상호 결합시킴으로써 전략적 대안들을 분석하고 설정하기 위한 모형
 - ㉡ PEST 분석 : 조직의 거시환경인 정치(Politic), 경제(Economic),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환경을 분석
 - ㉢ STEPPER 분석 : 불확실한 미래를 보다 명료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핵심동인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환경(Environment), 인구(Population),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자원(Resource)을 분석

답 ④

16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 확보가 용이하다.
-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공간 제약이 완화된다.
- ③ 참여 주체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 ④ 조직 경계가 모호해 정체성이 약하고 응집력이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해설

- ① (×) 외부조직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 확보가 곤란하다. 즉 계약관계에 있는 조직의 파업 또는 폐업,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답 ①

네트워크 조직의 장단점

1. 장점

- ① 대규모 조직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소규모 조직이 갖는 높은 기동성·적응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음
- ②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기술변화, 소비자 수요변화,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신속적으로 대응하고 창의력 발휘를 촉진.
- ③ 환경 변화 감지장치를 구성단위들에 분산 배치하며 자원의존적인 조직과의 관계를 강화하므로 외적제약, 즉 불확실성을 감소시킴.
- ④ 계층제보다 더 큰 다양성이 있고, 시장보다 풍부하고 복잡한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므로 학습을 촉진함.
- ⑤ 아웃소싱을 활용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없이도 신속하게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으며 자원을 절약함.
- ⑥ 전 지구적으로 최고 품질과 최저 비용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대단히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갖춘. 정보통신망에 의해 조정되므로 직접 감독에 필요한 많은 지원 및 관리 인력이 불필요함.
- ⑦ 구성원의 자율성이 높고 구성원 관계가 수평적임. 도전적인 과업 수행에 따른 직무확충을 통하여 직무동기 유발.
- ⑧ 정보통신기술의 실시간 활용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
- ⑨ 수평적 연대와 파트너십은 구성단위 간 권력균형화와 신뢰구축에 기여.

2. 단점

- ①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곤란하며 외부기관과의 느슨한 연계로 구성단위 간 신뢰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리인의 기회주의 행위 방지를 위한 조정·감시 비용 증가.
- ②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 확보가 곤란함.
- ③ 조직경계가 모호해 정체성이 약하며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렵고 구성원의 충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직이 빈번해짐.
- ④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폐쇄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외부의 조직에 대한 배타성이 우려됨.
- ⑤ 고도기술과 경제적 영향력을 외부조직에게 넘겨줄 수 있으므로 속이 빈 공동조직(hollow organization)으로 전락할 수 있음.
- ⑥ 잠정적 고용관계로 인해 고용불안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초래.
- ⑦ 네트워크 구성단위 간 업무과정 의존도가 높고 업무과정의 각 단계는 실시간으로 연계되므로 한 곳의 지연이나 실패는 네트워크 체제 전체에 연쇄작용을 일으켜 업무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 ⑧ 네트워크 체제 내 권한과 책임의 소재와 계통이 모호해 지연·낭비의 우려가 있음.
- ⑨ 중심조직 종사자와 주변조직(계휴조직) 종사자들 사이에 계층화 조장 우려.
- ⑩ 각 조직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권위가 존재하지 않음.

17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해 1999년에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 ②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 ③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는 특허청이 유일하다.
-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신분은 공무원이다.

해설

- ① (×) 1999년 1월(김대중 정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 1월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1차 대상기관 10개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시범 실시.
- ②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관의 존속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 중앙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현재는 특허청만 있다.
- ④ (○) 소속책임운영기관장 : 개방형임용,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임기 2년 이상 5년 이내로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함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소속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임용)

-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정답여부 : 가답안은 ②이지만 ①의 경우도 틀린 내용이므로 ①② 모두를 답으로 봄

답 ①②

18 생계(Senge)가 제시한 학습조직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집단적 사고(collective thinking)
- ②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
- ③ 공유비전(shared vision)
- ④ 사고모형(mental model)

해설

① (×) 집단적 사고(collective thinking)가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systems thinking), 집단적 학습[팀 학습](team learning)을 구성요소로 제시

☒ 생계(P. Senge)의 학습조직을 위한 다섯 가지 수련(disciplines)

- ① 자기완성[전문적 소양,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 : 개인적인 비전을 지속적으로 명료화하고, 심화시키며, 자신의 비전과 현재상태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업무전반에 걸쳐 전문가적 수준이 되는 것을 말하며 창조적인 긴장이 유지될 때 형성됨.
- ② 사고의 틀[사고모형·세계관](mental model) : 인식과 사고의 내면에 놓여있는 준거의 틀로 개인이 세상 조직에 적응해 가는 방식에 대해 가지는 신념. 성찰기술·탐구기술을 통해 잘못된 인식체계를 개선.
- ③ 공유된 비전(building shared vision) :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모든 조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일체감과 사명에 대한 공감대).
- ④ 집단적 학습[팀 학습](team learning) : 구성원 간 진정한 대화와 집단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개인적 능력의 합계를 능가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축하게 하는 것. 학습조직은 개인적 학습보다 사회적 학습을 강조.
- ⑤ 시스템적 사고(systems thinking) : 조직 내의 문제 파악 시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부 구성요소들을 상호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으로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 수동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행위 유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적 복잡성을 통찰할 수 있는 사고양식.

답 ①

19 강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키너(Skinner)의 자극-반응의 심리학에서 발전된 동기부여 이론이다.
- ② 적극적 강화란 자극에 따른 반응 행동에 관해 제공되는 보상이나 기타 바람직한 결과를 말한다.
- ③ 회피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 ④ 연속적 강화란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 미리 계획된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 ③ (○) 회피 = 소극적[부정적] 강화
- ④ (×) 연속적 강화 : 성과(바람직한 행동)가 나올 때마다 강화요인 제공 **예** 정답을 맞힐 때마다 칭찬
고정간격강화 :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 미리 계획된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 **예** 매월 25일 봉급 지급

☒ 스키너(B. Skinner)의 조작적 조건화이론(operational conditioning theory)

• 자극·선행요인(stimulus or antecedent) ⇨ 반응행동(response) ⇨ 행동의 결과(consequence) ⇨ 행동에 영향

선행적 자극 업무상황에 처해	반응 조직이 바라는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을 하면 그에 결부시켜	행동의 결과 = 유인기제 [보강[강화] 처벌·중단]을 제공
---------------------------	-------------------------------------	--------------	--------------------------------------------

• 행동의 결과(유인기제 = 학습기제)

강화(보강) (reinforcement)	① 적극적 강화(긍정적 강화) : 행위자가 좋아하는 것을 제공 예 칭찬, 승진, 특별상여금 ② 소극적 강화(부정적 강화) : 행위자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 예 숙직 면제, 야근 제외	장래에 같은 행동을 반복할 확률을 높임.
처벌(제제·벌) (punishment)	① 수여성 벌(제1종 벌) : 행위자가 싫어하는 것을 제공 예 감봉, 견책 등 징계, 야근 ② 제거성 벌(제2종 벌) : 행위자가 좋아하는 것을 제거 예 권한박탈, 직위해제	장래 동일 행동의 재발을 억제(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의 빈도·강도를 감소시킴)
소거·중단 (extinction)	중립적 자극(neutral stimuli). 기존의 강화를 제거하여 반응의 강도가 감소되는 것. 학습된 행동이 점차적으로 적게 나타나도록 강화물을 보류하거나 강화를 통행 형성된 행태를 제거 예 종전에 해주던 칭찬 중단, 시행 중이던 성과금제 폐지	

☒ 강화일정(강화계획)

강화일정		의미	장점	단점
연속적 강화		성과(바람직한 행동)가 나올 때마다 강화 예 정답을 맞힐 때마다 칭찬	초기단계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 빈도를 늘리는데 효과적임	강화효과 빨리 소멸. 관리자에게 큰 도움이 안 됨
단속적 강화	간격 강화	고정간격 예 매월 25일 봉급 지급	봉급인상, 진급 등의 보상에 효과적	성과를 높이는데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음
		변동간격 예 보너스, 승진	봉급보다는 칭찬 등 적극적 강화나 회피 등 부정적 강화에 효과적	봉급에는 부적절
	비율 강화	고정비율 예 매출액 증가율에 비례한 성과급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데 효과적	
		변동비율 예 특별보너스, 도박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	봉급인상, 진급 등의 보상에 비효과적

답 ④

20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 ② 목표관리제(MBO)의 목표설정은 외향적이나 총체적 품질관리의 목표설정은 내향적이다.
- ③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업무수행 노력의 초점이 개인적 노력에서 집단적 노력으로 옮겨간다.

해설

② (×) 반대로 서술됨.

MBO와 TQM

구분	MBO(목표관리)	TQM(총체적 품질관리)
성격	관리전략적 차원	관리철학적 차원
시계(視界)	단기적·미시적	장기적·거시적
지향	내부지향성 - 개인·조직 단위의 내부적 관점에서 목표설정 목표지향 / 폐쇄적	외향적 관점 - 고객과의 관계 중시(고객위주행정) 고객지향 / 개방적
목표설정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목표설정	고객의 필요에 따라 목표설정
초점	양적 목표의 달성 결과[산출] 중시(성과지향, 목표달성도)	서비스의 질적 개선 - 투입과 과정의 개선 과정 지향(행정서비스의 품질개선)
관리의 중점	사후적 관리(평가·환류 중시)	사전적 관리(예방적 통제 중시)
산출의 계량화	중시	중시하지 않음
보상방법	팀워크도 중시하되 개별적 보상이 강함(개인에게까지 세부적 목표 부여)	팀 단위 노력에 대한 보상 중시(총체적 헌신-집단·팀 중심 활동 중시, 개별적 성과급 지급은 팀워크 저해 가능)
유사점	참여, 팀워크, 협력 중시, 민주적 분권적 관리, Y이론적 관리	

TQM의 특징

TQM의 특징	사전적 품질 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수평적 분권적 구조	협력	집단적 노력·팀워크·협력 중시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고객위주 행정 (Post-Fordism, 소비자 중심)	고객에 의한 서비스 품질 평가	장기적 거시적 안목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 개선과 환류	무가치한 업무나 과오·낭비의 불허
TQM의 특징이 아닌 것	사후적 품질 관리	서비스의 양적 수준 증대	수직적 집권적 구조	분업	개인적·개별적 노력 중시, 개인별 성과 측정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의 경시	관중심 행정 (Fordism, 공급자 중심)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품질평가	단기적 미시적 안목	결과나 산출에 초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낭비의 허용

답 ②

2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설립할 수 있다.
- ③ 기관 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 ④ 두 개 이상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해설

①②④ (○) ③ (×)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1기관 1협의회만 설립 가능(1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 불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 ①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단, 2022.10.27.부터는 일정 연합협의회 인정(시행령도 개정될 것으로 보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연합협의회) [시행일: 2022. 10. 27.]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답 ③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직장협의회		
구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무원직장협의회
법적 근거	헌법 33조 2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헌법상 근거 없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	행정부, 국회, 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최소단위로 설립. 복수노조, 전국단위 노조, 노조연합체 가능	기관장이 4급 이상 상당인 기관 단위로 1기관 1협의회만 설립 가능. 20이상 기관에 걸치는 협의회나 연합협의회 설립 금지(단, 2022.10.27. 부터는 일정 연합협의회 인정)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 신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설립 통보
가입 범위	가입 가능 ①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단, 교원 제외 - 교원은 교원노조법상 교원노조 가입 가능) ③ 별정직 공무원 ④ 위 ①부터 ③까지 해당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①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 직렬 외무공무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③ 위 ①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단, 2022.10.27. 부터는 계급 제한 폐지, 경찰·소방공무원도 계급 제한 없이 모두 가입 가능)
	가입 불가 위 가입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음 공무원은 가입 불가. ①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위 가입 가능한 범위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음 공무원은 가입 불가. ①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 단서에 의해 공무원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사실상 노무 종사자의 노조) ②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③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자동차운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섭·협약	단체교섭·협약체결권 인정	협의만 가능(단체교섭·협약체결권 인정되지 않음)
전임자	노조 전임자 인정(무급휴직)	협의회 전임자 금지
사용자의 교섭의무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해태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기관장에게 매년 2회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거부·해태 시 제재규정 없음
분쟁조정	중앙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 행정구제절차에 따름

22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을 분리하여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 ②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 기관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인사업무를 총괄한다.
- ③ 준사법 기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④ 국무총리 소속이며 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해설

② (×)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 행정부의 인사업무를 총괄.

• **국가재정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③ (○) **중앙인사기관의 준사법적 기능** : 인사에 관한 구속력 있는 제재나 의결을 할 수 있는 기능

징계	비위공무원에 대한 제재 및 징계	• 중앙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 • 각 부처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심사	위법 또는 부당한 제재를 받은 공무원으로부터의 소청에 대한 재결	•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 행정부 공무원의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
고충심사	직무상 고충심사 및 해결책 제시	•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가 겸함) • 각 부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④ (○) 지문에 '인사혁신처는'이 추가되어야 함.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국무위원 후보자(각 부 장관)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대상이지만, 인사혁신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며 임명 전에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는다.

답 ②

23 실적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다.
- ②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계기로 실적제가 확립되었다.
- ③ 공무원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 ④ 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능력과 자격에 따라 채용된다.

해설

③ (×) 실적제는 인사기능이 집권화·법제화됨에 따라 신축성을 결여한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부적격자의 제거라는 소극적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됨.

답 ③

24 직무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열법은 직위의 등급 수를 미리 정하고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
- ② 점수법은 직무의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직무에 대하여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다.
- ③ 요소비교법은 대표 직위(key position)를 선정하여 대표 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 ④ 분류법은 등급별로 책임도, 곤란성,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직무를 해당 등급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해설

① (×) 직위의 등급 수를 미리 정하고 등급기준표를 활용하는 것은 분류법이다. 서열법은 기준표를 활용하지 않으며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 직무평가의 방법

특 징		직무와 기준표 비교(절대평가)	직무와 직무 비교(상대평가)
비계량적(주관적) 방법	직무전체 파악	분류법(정부에서 주로 사용)	서열법
계량적(객관적) 방법	직무구성요소별 파악	점수법(사기업에서 주로 사용)	요소비교법

서열법 (ranking method)	① 의의 : 가장 간단하며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직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서열을 부여하는 자의적·주관적 평가방법. 직무평가 담당자가 대상조직의 직무를 모두 잘 파악하고 있고 직무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합. ② 장·단점 : ㉠ 평가작업이 단순·신속하며, 비용·노력이 적음. ㉡ 분류될 직위가 복잡하고 수가 많으면 적용 곤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순위판단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공정성 시비가 있음, 분류될 모든 직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류담당자를 구하기 어려움.
분류법 (classification method)	① 의의 : 직위의 등급 수를 정하고, 직무요소에 대한 분석 없이 분류기준을 미리 작성한 등급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려는 직위의 직무를 어떤 등급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 ② 장·단점 : ㉠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구성원이 이해하기 쉽고, 서열법보다 세련된 방안으로서 정부부문에서 많이 사용. ㉡ 등급 정의 작업(등급기준표 작성)이 곤란하고 등급 기준이 명확히 차별화되지 않으며 평가할 직위가 많거나 직위가 복잡하면 유용성이 떨어짐.
점수법 (point method)	① 의의 :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가요소를 선정하여 비중을 결정하고, 몇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일정점수를 부여한 직무평가기준표를 작성한 후, 분류대상 직위의 직무를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직무평가기준표에 따라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고 합계하여 각 직위의 총점차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 계량적 척도 활용과 평가의 명료성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됨. 우리나라 고위공무원에도 적용. ② 장·단점 : ㉠ 체계적·과학적인 직무평가기준표를 사용하므로 평가결과의 타당도·객관도가 높음, 관련자가 평가결과를 쉽게 수용할 수 있으며, 안정성이 있어 직무평가의 일관성이 높음. ㉡ 절차가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과 많은 시간·노력 요구, 평가요소의 단계구분과 비중결정이 명확한 객관성을 가지기 곤란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필요.
요소비교법 (factor-comparison method)	① 의의 : 가장 늦게 고안된 방법으로 점수법의 단점인 평가요소의 비중결정과 단계구분에 따른 점수부여의 임의성을 극복하려는 기법. 평가할 직위에 공통되는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대표직위(key position; 표준직무·중심직무)를 선정하여 그 평가요소별 서열을 정한 후, 대표직위의 보수액을 평가요소별로 배분하여 제시. 이를 토대로 분류대상 직위의 평가요소별 서열에 따른 보수액을 배분하여 그 보수를 결정하고, 각 직위의 보수액 차이에 의해 직위의 등급이 결정됨. ② 장·단점 : ㉠ 분류대상 직위를 대표직위와 비교하므로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대표직위의 각 단계에 골고루 분포된 것을 선정하므로 평가범위가 넓어 분류대상 직위가 많은 경우 유리. ㉡ 대표직위 선택이 잘못되면 전체 분류대상 직위의 평가가 잘못될 수 있음, 대표직위의 평가요소별 서열결정에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으며 고도의 전문가 필요, 요소비교표 작성에 많은 시간·노력 필요.

답 ①

25 근무성적평정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자가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을 일컫는다.
- ② 후광 효과(halo effect)는 피평정자의 두드러진 특성이 다른 세부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 ③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은 평정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말한다.
- ④ 초두 효과(primacy effect)는 피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기간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업무수행 실적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하는 오류를 말한다.

해설

④ (×) 근접(근시성·최근성·막바지)효과(recency·proximity error)에 대한 설명이다. 최초(초두·첫머리)효과(primacy effect)는 근접오차와 반대로 첫인상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데서 오는 오류이다.

연쇄효과 (헤일로 효과 halo effect, 후광·현혹 효과)	의의	어느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전반적인 인상으로 작용하여 부분적 특징만으로 전체를 평가하거나,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일반적 인상 이 모든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하나의 장점이 모든 것을 좋게 평가하게 하거나 하나의 단점이 모든 것은 나쁘게 평가). 예 외모가 단정하면 신뢰성에도 우수한 평정,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 * 과거기록집착착오 : 연쇄적 착오의 일종으로 과거에 받은 평정과 같게 평정하는 경향
	방지 방안	㉠ 강제선택법이나 프로브스트법(평정요소 간 연쇄효과 배제) ㉡ 각 평정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평정(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피평정자 전원을 평가한 후 다음 요소를 평가) ㉢ 평정요소별 배열순서에 유의(평정요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유사한 요소의 배치를 멀리 떨어지게 함) ㉣ 평정척도를 만들 때 등급을 서로 달리하는 방법을 사용
분포상의 오류	유형	집중화 경향 (중심화 경향) : 평정자가 모든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수준 의 점수나 가치를 주는 심리적 경향. 평정상 의문이 있거나 피평정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모험을 피하려는 방편으로 모든 것이 평균이라는 평정을 하게 됨.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거나 평정에 자신이 없을 때 책임회피 수단으로 발생.
		관대화 경향 : 하급자와의 불편한 인간관계를 의식하여 평정결과 분포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쪽 에 집중됨(실제보다 높게 평가).
		엄격화 경향 : 평정결과 분포가 열등한 쪽 에 집중(실제수준보다 낮게 평가)
방지 방안	㉠ 강제배분법(강제할당법)·서열법 사용 ㉡ 집중화 방지를 위해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사용 ㉢ 평정요소의 중요성이 평정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중간을 택할 수 없는 체크리스트법 활용	
시간적 오류	유형	㉠ 근접(근시성·최근성·막바지)효과 (recency·proximity error) : 오래된 실적보다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경향.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시점에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현상. ㉡ 최초(초두·첫머리)효과 (primacy effect) : 근접오차와 반대로 첫인상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데서 오는 오류.
	방지 방안	MBO식 평정, 중요사건기록법, 평가센터법, 행태관찰평정척도법 활용 - 결과로 나타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목표관리제나 중요사건기록법을 사용하거나, 평가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평가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정

답 ④

26 공무원 성과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 6급(상당) 이하 및 모든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제 적용 대상이다.
- ② 국가공무원 5급(상당) 이상과 국립대학교 교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 ③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 ④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해설

① (×) 국가공무원 6급(상당) 이하는 호봉제가 적용되며 성과상여금 대상이다. 한시임기제를 제외한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으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 일반직·별정직·재외공무원(재외무관 제외)·군무원 중 1~5급(상당) 공무원, 임기제공무원(단, 한시임기제 제외),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지도관, 경찰공무원 중 치안정감~경정,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감~소방령, **국립대학교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등.

☒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 요약

유형	대상	기본급여	성과급여
연봉제	고정급적 연봉	정무직, 지방자치단체장	기본연봉(직책·계급 반영)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호봉제 적용 자 제외)	기본연봉 = 기준급(경력·누적성과 반영) + 직무급(2등급)
	성과급적 연봉제	5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제외) 등	기본연봉(경력·누적성과 반영)
호봉제	6급 이하 등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	봉급	성과상여금

답 ①

27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은?

- ㉠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직 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만 65세가 되는 때부터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 ㉡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 ㉢ 고액연금 지급 방지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이다.
- ㉣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 ㉤ 유족연금 적용률은 60%이다.
- ㉥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이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해설

- ㉠ (×) 연금수령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지급개시연령 : 퇴직연도기준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 2033년부터는 65세
- ㉡ (○) 종래 7%에서 2016년부터 5년간 단계적 인상하여 현재는 9%
- ㉢ (×) 180% ⇨ 160%(1.6배)
- ㉣ (○) 연금제도 비교

국 가	재원(개인부담 여부)	연금기금 조성 여부	관련 학설
미국·우리나라	기여제(국가와 공무원이 공동부담)	기금제	거치보수설(보수후불설)
영국·독일	비기여제(국가예산으로 부담)	비기금제	공로보상설(은혜설)

- ㉤ (○) 유족연금은 전·현직 모두 60% 적용(2015년 개정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사유 발생자부터)
- ㉥ (×) 연금지급률은 종래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9%였으나 1.9%를 1.7%로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 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할 날의 전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
 ※ 기준소득월액 :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 공무원연금법 개정 내용(2015.6.22. 공포, 2016.1.1부터 단계적 시행)

구분	기존	개편 후	비고
공무원 기여율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2016년부터 5년간 단계적 인상
정부 부담률 인상	보수예산의 7%	보수예산의 9%	
연금 지급률 인하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9%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7%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연금산정시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	•2009년 이전 임용 : 60세 •2010년 이후 임용 : 65세	원칙적으로 임용시기 구분 없이 65세	퇴직연도기준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연장 2033년부터는 65세
기여금 납부기간과 퇴직급여 산정 시 재직기간 상한 연장	33년	36년	재직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 별 33~35년으로 함.
연금수령조건 완화	가입기간 20년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완화
기존수급자연금액 동결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조정	2016년부터 5년간 동결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2009년 이전 : 70% •2010년 이후 : 60%	60%	전·현직 모두 60% 적용(개정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사유 발생자부터)
공무상 유족 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급요건 개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	

답 ②

28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과정은 어느 한 시점(t)을 놓고 보면 t+1년의 예산을 편성하고, t년의 예산을 집행하고, t-1년의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질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의결해야 한다.
- ③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 각 부처에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경기과열, 임금인상, 세입부족 등의 상황에서는 예산지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 ④ 국회는 회계기록의 회계검사와 결산보고서의 심의·의결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집행이 예산안에 반영된 입법부의 의도를 충실히 따랐는지를 확인한다.

해설

- ① (○)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1년도 예산 편성·심의	2021년도 예산 집행	2021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2022년도 예산 편성·심의	2022년도 예산 집행	2022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2023년도 예산 편성·심의	2023년도 예산 집행	2023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

- ②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규모 및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지출항목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결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이다(헌법 54조 2항).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하고 시행하게 된다.
- ③ (○)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 회계기록의 회계검사는 감사원의 기능이다. 회계검사, 결산검사·확인 ⇨ 감사원 / 결산 심의·의결 ⇨ 국회

답 ④

29 예산원칙과 그 예외 간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일성의 원칙 - 기금
- ② 사전의결의 원칙 - 특별회계
- ③ 한정성의 원칙 - 이월
- ④ 완전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해설

② (×) 특별회계는 통일성원칙, 단일성원칙의 예외이다.

전통적 예산원칙과 예외, 현대적 예산원칙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유형	내용	예외	
공개성	국민에게 공개	신임예산, 국가정보원 예산(정보비)이나 국방부 일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부책임 • 행정부재량 • 행정부계획 • 예산기구 상호교류 • 보고 • 다원적 절차 • 적절 수단 구비 • 시기신축성
명확성·명료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편성	총액(총괄)예산(총액계상예산), 예비비	
명세성	구체적 항목에 따라 세분화	총액(총괄)예산	
엄밀성·정확성	예산(예정) = 결산(확정) *세입 = 세출 (수지균형)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음	예산불용액,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장치로 인한 예산·결산 간 불일치 *엄밀성을 세입 = 세출로 볼 경우 흑자예산, 적자예산	
한정성 (한계성)	양적 한정성(초과지출 금지)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질적 한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이용, 전용, 예비비	
	시기적 한정성 (회계연도독립원칙)	이월(명시·사과이월),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지난 연도 수입·지출, 긴급배정	
단일성	재정활동을 단일예산으로 편성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예산	
통일성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의 연결 금지. 국고로 통합, 국고에서 지출	기금,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수입금마련지출,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사전의결 원칙	의회가 사전 심의 및 의결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공공기관의 예산, 긴급재정·경제 명령·처분, 선결처분,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완전성·포괄성 예산총계주의	모든 세입·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포괄성의 원칙)	순계예산, 공공기관 예산, 기금, 정부의 현물출자, 전대차관, 초과지출 가능한 차관물자대,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제도	

답 ②

3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는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는 사업성과가 좋은지 나쁜지의 결과에 초점을 두며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 ③ 계획 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렵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ing)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간관리층을 포함한 구성원의 참여 및 이들의 상향적 의사소통 통로가 확대된다.

해설

- ① (○)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부적 지출대상별로 예산지출액을 결정해주므로, 재정적 한계를 지키기 쉽고, 집행부의 재량을 축소한다. 관료의 재량을 줄임으로써 부정과 예산의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성 위주의 회계검사가 용이하다. 예산과목의 최중단위인 목(目)을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므로 회계책임을 명확히 한다.
- ②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한다. 기능별·사업별·활동별로 편성되므로 정책과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정부 사업의 목적과 성격) 일반국민과 입법부가 이해하기 쉽다.
- ③ (○) 계획예산제도는 전문 막로 중심의 운영과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의 권한을 강화(대통령에게 권한 집중, 부처 내에서는 국·과보다는 장관에게 권한 집중)시켜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하다. PPBS의 복잡한 분석기법과 편성방법을 의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예산심의기능과 재정통제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 ④ (○) 영기준예산제도는 계획예산보다 운영 면에서 전문성을 적게 요구하므로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가진다. 정책결정항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검토되고 순위가 결정되므로 전문참모가 아닌 계선기관의 중간관리자나 하급관리자에게 참여(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면서도 중앙의 목표가 부처의 예산운영단위에서 존중되도록 하고 단위기관 고유업무의 특성을 중시하므로 다양한 이질적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체에서 그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답 ②

3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검토한다.
- ② 성인지예산서에는 양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 ④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금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 ④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2010 회계연도 예·결산부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2011 회계연도 기금부터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와 성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국가재정법에 규정을 두어 세계 최초로 국가재정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시.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에 의해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 시행.

• 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의 작성)

-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답 ④

32 예산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체주의는 기존의 예산을 토대로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결정을 추구한다.
- ② 점증주의는 각 이해집단 간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한 최적의 예산결정을 모색한다.
- ③ 단절균형모형 관점에서 예산결정의 참여자들은 점증적인 예산결정 행태를 보이다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예산결정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킨다.
- ④ 다중합리성모형 관점에서 예산과정은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되기보다는 예산과정의 다양한 단계별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실제 예산배분이 결정된다.

해설

- ① (×) 점증주의의 특징이다.

■ 단절균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 바움가트너(F. Baumgartner)와 존스(B. Jones)

- ① 정책변화나 예산변화에 있어서 빈번한 소폭적 변화와 간헐적인 대폭적 변화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이론. 기존의 점증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급격한 변화를 포함한 이론으로 정책이나 예산은 균형상태(equilibrium)가 지속되다가 단절적인 변화(punctuation)가 발생하고 다시 균형상태가 지속된다는 이론. 단절은 대폭적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때 존재하고, 균형은 소폭적 변화가 주로 발생할 때 존재하며 이러한 균형이 유지되는 이유와 단절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
- ② 정책변화나 예산변화가 대부분 점증적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비점증적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비점증적 변화는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우선순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예산이론이나 정책이론에 있어서 점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적 적용가능성이 높은 이론.
- ③ 단절균형은 진화생물학, 역사적 제도주의의 개념으로 정책과정 및 예산과정이론에 수용됨. 균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의제목록, 정책독점, 정책하위체계, 제한적 합리성 등이 활용되고, 예산의 단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정책 독점의 붕괴, 대중매체의 관심, 정책이미지, 정책투입활동 등이 활용됨.
- ④ 정책결정을 소수의 정책결정자들만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닫힌 시스템이자 구조인 정책독점 상황에서는 단일의 정책이미지가 폭넓게 지지를 받아 지속적인 안정이 유지되고 점증적 변화만 나타남. 그러나 정책이미지의 변화로 인해 대중매체·여론에 의해 어떤 이슈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증대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기존의 이해관계자 간의 권력 균형이 깨지며 정책독점이 붕괴되어 열린 시스템으로 전환됨. 정책독점이 붕괴되면 정책이슈는 정책하위체계로부터 거시정치체계로 이동하여 급격한 정책변화가 나타나 오랫동안 지속되던 정책이나 예산에 단절이 발생함.
- ⑤ 정책체계에서 외부로부터의 요구나 정보가 부적(負的)으로 환류(negative feedback)가 되면 정책독점이 유지되고 하위정책체계인 정책공동체 내부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정적(正的)인 환류(positive feedback)가 이루어지면 정책독점이 붕괴되어 정책이슈가 거시정치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슈네트워크로 이동되어 정책 또는 예산의 변동이 발생.
- ⑥ 한계 : 사후적 분석으로는 적절하나 단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므로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다중합리성이론(Multiple Rationalities Theory) - 서메이어(K. Thurmaier)와 윌로비(K. Willoughby)

- ① 예산을 결정하는 결정자 또는 조직은 다양한 합리성을 내포하고 다양한 합리성에 근거한 목적들을 추구하여 예산에 관련된 결정을 한다는 이론(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Rubin의 실시간예산운영모형을 통합). 기존 예산결정론이 완전한 합리성과 제한된 합리성 중 어느 것이 더 설명력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예산결정자와 예산결정기관 내에 다중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봄(예산결정과정의 가진 복잡성을 이론으로 포섭).
- ② 중앙예산기구는 반대자, 통로(conduit), 촉진자, 정책분석가,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효과성 측면에서 정치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을,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을 동시에 추구. 예산결정자의 의사결정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으로 구성됨.
- ③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중앙예산실의 예산분석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시적으로 분석. 중앙예산기관의 예산분석가들을 중심으로 각 예산주기 간의 관계, 정보의 흐름, 예산상의 역할, 최종 지출계획을 결정하는 개인의 선택을 이해하고자 함
 - ④ 정부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예산활동과 행태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 예) Rubin의 실시간예산운영모형
 - ⑤ 조직 내에 다양한 합리성이 공존하며 특정 유형의 합리성만이 유일하게 조직의 의사결정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다중기준의사결정이론, 다중합리성조치이론, 관료제재량권이론과 같은 맥락.

답 ①

33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입해야 한다.
- ② 현금주의는 비용과 수익을 알 수 없어서 경영성과 파악이 어렵다.
- ③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에 유리하다.
- ④ 현금주의는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치적 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이다.

해설

- ① (○) **차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 **대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 ② (○)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여, 현금 수취시 수입으로, 현금 지불시 지출로 인식한다. 따라서 수입·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수익의 발생은 기록하지 않으므로 비용·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하며 거래의 실질 및 원가가 반영되지 못하고, 현금 출납정보만으로는 경영성과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다.
- ③ (×) • **현금주의**는 자산이나 부채 등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자산이나 부채 평가시 발생하는 주관적 판단이 배제되어 **발생주의보다 객관성 확보,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 **발생주의**는 **회계담당자의 주관성 개입(예) 자산평가·감가상각의 주관성, 채권·채무의 자의적 추정**으로 인한 정보왜곡 우려가 있다. 실제 현금지출내역을 기록하지는 않으므로 **비목별(費目別) 통제가 곤란하여 의회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④ (○) 가시적 치적 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는 예산 지출 금액이 외형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현금주의·단식부기이다.

답 ③

34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 ㉠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개별 사업 위주의 단년도 예산편성에 적합하다.
- ㉡ 각 부처는 소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 ㉢ 재정 운용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하향적 예산편성 방식이다.
- ㉣ 한도액의 설정으로 각 부처의 과도한 예산요구 관행을 줄일 수 있다.
- ㉤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됨에 따라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책임성과 권한이 강화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해설

- ① (×)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배경 - 상향식 예산편성제도의 한계**
개별사업별 검토중심의 단년도·상향식 예산편성방식을 탈피하고, 사전에 국가재원을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방식을 전면 혁신하여 2004년 도입(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적용).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과제로 추진

기존 예산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
단년도 예산편성 중심(단기적 시각). 중장기적 시각의 재정운영 곤란	단년도 예산편성이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하여 장기적 목표 고려
개별사업 검토 중심 → 공약 등 정치적 우선순위와 예산의 연계 곤란, 각 부처의 과도한 예산요구 관행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전략적 자원배분, 정책기능 강화. 과다요구 관행 축소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 감소
상향식(bottom-up) 편성 각 부처 예산요구 → 예산기관의 대폭 삭감 → 편성	하향식(top-down) 편성 지출한도 설정 → 각 부처 자율편성 → 종합편성
예산 투입에 치중 - 재정지출의 사후 성과관리 곤란	성과관리에 중점 - 성과관리제와의 연계

- ㉠ (○) 단년도 예산편성방식과 달리 재정당국(기획재정부)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5개년) 자원배분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위원들이 토론(국무회의)을 통해 연도별·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Top-Down), 각 부처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별사업별 예산을 편성·제출하여 협의·조정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정부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제도.
- ㉡ (○) 지출 총액을 결정하고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후 구체적 사업별 예산을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며 Top-down(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이라고도 한다. 총액 한도 통제(집권, 하향, 거시적 / 총량적 재정규율)와 세부 사업별 예산배분의 자율성(분권, 상향, 미시적 / 배분적 효율성)의 조화
- ㉢ (○) 각 부처의 과다요구에 따른 재정당국 대폭삭감 등 예산편성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한다. 각 부처의 예산과다 청구관행이 줄어들고 중앙예산기관의 예산사정과정이 단순해진다.
- ㉣ (○) 부처별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므로 각 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미리 결정할 수 있고,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 강화.

답 ④

35 다음 중 (가)와 (나) 안에 들어갈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모든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 지방정부가 배분받은 사무는 되도록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①	보충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②	불경합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③	현지성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
④	효율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해설

•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권한·책임 명확화 원칙(불경합성·경합피지[競合避止] 원칙, 중복배분금지 원칙)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보충성(subsidiarity) 원칙 / 현지성 원칙(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포괄성·종합성 원칙.

답 ①

36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행정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층제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 ③ 단층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해설

- ② (○) 단층제 : 계층 수가 적어 이중행정·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 경유기관을 줄여 행정 지연 방지, 신속한 행정,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신속한 행정 가능
 중층제 : 계층 수가 늘려 이중감독·이중행정의 폐단으로 인한 비능률, 경유기관 증대로 인한 행정지연과 거래비용·의사전달비용 증대 초래

☒ 단층제와 중층제(다층제)의 장·단점

구분	단층제(single - tier system)	중층제·다층제(multi - tier system) * 2층제
장점	① 행정계층 수가 적어 이중행정이나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 경유기관을 줄여 행정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 거래비용·의사전달비용 감소 ② 행정책임의 명확화(단독의 지방정부가 주민생활행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게 됨) ③ 다층제보다 자치단체의 자치권, 지역의 특수성·개별성 존중 ④ 중앙정부와 주민 간 의사소통이 다층제보다 원활, 주민의사의 누수 방지 ⑤ 모든 자치단체가 수평적 대등관계에서 상호 간 경쟁·협력·분담관계를 활성화 ⑥ 중간단계가 없으므로 '작은 정부' 차원에서 볼 때 규모의 축소가 구현됨	①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업체계, 행정기능의 적정관리규모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구획하여 전문성·효율성 제고(광역 : 전략적 기능, 기초 : 전술적 기능) ② 중간자치단체가 보완, 대행, 감독, 광역행정기능 수행(기초자치단체의 능력 부족을 보완,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의 사전 조정,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는 광역적 사무 수행) ③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 국가에 적합 ④ 국가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관계 유지, 중앙의 직접통치가 광역자치단체의 감독으로 대체되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감독·간섭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보호,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국가의 감독기능은 유지됨. ⑤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이 작아 주민의 접근성 증대, 주민참여 용이,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성 민감성 향상 ⑥ 지방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반영(혈연적·지연적 공동체는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수립 후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 통치권을 행사한 것은 광역자치단체)
단점	① 광역적 행정·개발사무처리에 부적합 ② 자치단체 간 갈등이 중앙의 이슈로 될 가능성이 많으며 사전조정 곤란 ③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 국가에 부적합(중앙정부의 통솔범위가 넓어져 다수의 지방정부 통제·조정 곤란) ④ 중앙집권화와 중앙정부의 비대화 우려(광역자치단체라는 여과장치가 없어 자치단체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무는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대항할 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음) ⑤ 계층 수 축소는 구역의 크기를 확대시켜 다층제보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 저하, 주민참여 곤란,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성·민감성 둔화	① 이중감독, 이중행정의 폐단으로 인한 비능률, 경유기관 증대로 인한 행정지연과 거래비용·의사전달비용 증대 ② 중간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책임의 불명확성(책임의 전가, 행정책임의 사각지대 발생) ③ 지역별 특수성·개별성 경시(기초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구역 내 모든 행정기능을 광역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처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 ④ 국가와 주민 간 상향적 의사전달과 하향적 행정침투의 왜곡·저해 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경쟁·협력관계에 대해 간섭·통제하므로 자치단체의 외교적 역량의 성장을 방해

답 ②

37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임명하고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한다.
- ㉢ 지역 간 치안 격차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해설

-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사무 처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도지사 소속 x)으로 둠. 단장은 도지사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개방형 임용도 가능)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도지사의 지휘·감독x)을 받음.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지사가 임용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
- ㉡ (×) 자치경찰사무는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일정 사무임. 정보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단,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 ㉢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 라. 수사사무 일부(지역밀착형 수사업무) :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 • 국가경찰제(유럽대륙형)와 자치경찰제(영미형)

구분	국가경찰제(유럽대륙형)	자치경찰제(영미형)
의의	국가가 설립·조직·관리하고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귀속. 대륙법계의 국가(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단일명령체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조직·관리하고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영미법계 국가(주로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 주민자치사상)
수단	권력적 명령·강제가 주된 수단	권력적 명령·강제보다는 비권력적 수단 중시
장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므로, 보다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가능하고 비상시에 유리 ② 조직의 통일적 운영(명령계통 일원성, 통일적 지휘체계) ③ 경찰활동의 능률성·기동성 ④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 원활 ⑤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 제공 ⑥ 조직·광역·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개혁 용이 ②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고 인권·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의 지지를 받기 쉬움. 경찰과 시민의 유대 강화 ③ 각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지역별 특수성 고려) ④ 채용과 책임의 분담 ⑤ 집권당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서 경찰권행사가 정권유지수단에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
단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의 특정정책의 수행에 이용되어 경찰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음 ② 경찰조직이 비대화·관료화·정치화되어 주민과 멀어지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 의식 약화 ③ 각 지방의 특수성·창의성 저해.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치안행정 곤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곤란하고, 전국적인 기동성 약화와 조직체계의 무질서화 초래. 일반행정예의 예속. ② 전국적·광역적·통일적 경찰활동에 부적합, 전문성의 약화 ③ 자치단체의 재정 차이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등 ④ 타 경찰기관과 및 국가행정기관과의 협조·응원체계 곤란 ⑤ 조직·광역·국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곤란 ⑥ 지방세력가의 간섭으로 인한 정실·경찰부패(지역정치화 우려)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답 ③

3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 ② 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관통합형이며 중앙통제형 강시장-약의회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해설

①② (○)

☒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통합 여부 기준)

구분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형·일원형[一元型])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대통령중심제형·이원형[二元型])
의미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기능(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기관에 집중·귀속시키는 유형.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가 지방행정관료를 지휘하고, 자치사무를 집행. 보통 의회의장이 자치단체장을 겸직.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정책 결정기능(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다른 기관에 분담시키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통해 자치행정을 수행함. 집행기관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형태.
채택 국가	전통적으로 주민자치형 국가에서 주로 채택 현재 영국·프랑스에서 주로 채택	전통적으로 유럽대륙의 단체자치형 국가에서 주로 채택 현재 일본·우리나라·이탈리아에서 채택
장점	① 지방행정의 권한·책임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집중되므로, 민주정치와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 용이 ② 의결·집행기관 간 대립·갈등이 적으므로, 지방행정의 안정성·능률성(효율성) 확보 ③ 의결·집행기관의 단일화에 따른 정책효과의 극대화 ④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채택 용이	①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현 ② 행정의 전문성 향상 ③ 단일 지도자를 통한 행정의 종합성·통일성 확보. 행정책임 소재가 명확 ④ 행정부서 간 분파주의의 배제 - 자치단체장에 의한 조정·통합
단점	①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정치의 이익 손상 ② 행정의 전문화·분업화 저해 ③ 단일의 지도자가 없어서 행정의 종합성·통일성 약화, 행정책임 소재의 불명확 ④ 지방행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됨. ⑤ 실·국 간 조정 곤란에 따른 할거주의(분파주의) - 의회의 정치적 파벌주의가 집행 부서 간에도 확산	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병존에 따른 비효율 ② 의결·집행기관 간 대립·갈등시 지방행정의 안정성·능률성 확보 곤란

- ③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관대립형이며 중앙통제형 강시장-약의회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 ④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대립형이 아닌 형태의 기관구성방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답 ③

39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 ②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③ 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④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해설

이하 법규정은 지방자치법 규정

- ① (○)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③ (×)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자는 종래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답 ③

40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 ㉢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해설

- ㉠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 주민투표법 개정 내용(2022. 4. 26. 시행)

구분	종전 규정	개정된 규정
청구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청구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or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or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모두 (2022.10.27. 시행)
실시요건	주민서명으로 청구, 지방의회 의결로 청구, 자치단체장 직권 → 자치단체장이 실시 가능(임의)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실시 가능. 단, 주민서명으로 청구 or 지방의회 의결로 청구시에는 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함(필요적)
청구서명	서면서명	서면서명 or 전자서명
개표방식	현장투표·우편투표 / 수개표	정보시스템을 사용한 전자투표·전자개표도 가능(청구인 대표자 요구 시, 지방의 회의 요구사, 자치단체장이 필요시)
투표일	발의일부터 23~30일 이내에서 단체장이 관할선관위와 협의·결정	발의일부터 23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주민투표운동기간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
확정 요건	총투표권자 1/3 이상 투표, 유효투표수 과반수 찬성	총투표권자 1/4 이상 투표, 유효투표수 과반수 찬성
개표 요건	총투표권자 1/3 이상 미투표시 개표 안 함(부결)	총투표권자 1/4 이상 미투표시에도 개표(주민투표 실시했으면 모두 개표)

㉣ (○) 주민감사청구제도 변경 내용

종전 규정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현재 규정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 (×) 지방자치법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답 ③